

1. 의결주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사업자 참여를 통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모
를 통해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
하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에서 삭제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도 삭제하고,
신설된 규제신속확인 제도의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를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법 제3조 적용대상 지역 내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한다.

제29조 중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으로 한다.

제31조제3항중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을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를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 등”으로 한다.

제8장에 제46조~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제5호 중 “국내외 확산방안”을 “추진체계”로 하고, 같은조에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7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법제49조2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 중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를 “시행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3개월 전”을 “2개월 전”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를 “스마트혁신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2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대한”을 “관할 지역의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별료”를 “스마트혁신사업별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중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를 “스마트혁신사업자는”으로, 같은 항에 제4호 중 “및 시험·검증 결과”를 “결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30일 전까지”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 또는 수시적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법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하는 경우 그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스마트혁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57조제3항 중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30일 전까지”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 ②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사업시행자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

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을 “(스마트혁신·실증사업 및 규제신속확인 등 규제특례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제1호 및 2호를 삭제하고, 제1항 중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규제특례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9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2조~5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검토 중인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사업시행자)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⑤ ----- ----- ----- ----- ---
1. <u>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u>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1. <u>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법제3조 적용대상지역 내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u>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2. ----- ----- --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3. ----- ----- ----- --
제29조(보조 또는 용자)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	제29조(보조 또는 용자) ----- ----- ----- --- <u>스마트도시건설사업</u> 등 --- -----

거나 용자할 수 있다.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 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 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u>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 정방법에</u>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인증기준, 인 증방법 및 인증절차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u>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 소, 운영 등에</u> ----- ----- ④ ----- <u>인증기준, 인 증 유효기간, 인증방법 및 인증 절차 등에</u> ----- ----- ----- -----
제8장 <u>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u> 제46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 정 대상 및 신청절차) ① 법	<삭 제> <삭 제>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기도 시흥시의 관할구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6호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이라 한다)에 해당 사업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기간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계획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계획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

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7.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2. 법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제안내용의 검토 결과(같은 항 후단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

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확정 여부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기업·개인·단체·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확정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하고 90일을 계산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3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

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4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규제혁

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제47조(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

혁신지구계획 제안) ① 민간기

업등은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을 제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등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표시

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실

시하려는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제52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신청서 및

첨부 서류(제53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으

<삭 제>

로부터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제안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제안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스마트규제혁신
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안한 민간기업등에게 그 결과
를 통보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규제혁신지구계획에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안내
용의 반영에 관하여 민간기업등
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의 공고 등) ① 법 제47조제8
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하는
경우: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전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
는 경우: 법 제47조제1항에 따
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삭 제>

을 신청하기 전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3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기업 등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대한 의견인 경우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해당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

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검토 결과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9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필요성 및 명칭·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정성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여건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추진전략과의 정합성(整合性)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의 연관성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5.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이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안전·편익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6.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삭 제>

이 해당 지역 및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효과

7.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법 제4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포함되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 및 기간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내에서 추진할 사업의 주요 내용

4. 제52조제6항 각 호의 내용(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삭 제>

5. <u>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u> 6. <u>관련 자료의 열람방법</u> 7. <u>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51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u>법 제4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지정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u> 2. <u>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 변경</u> 3. <u>다른 법령·계획 등의 개정</u> <u>에 따른 용어의 변경</u> 4. <u>오자·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u> 5. <u>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u> ② <u>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	--

<삭 제>

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
으로 인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
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
한 경우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당
시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
획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포함되
지 않았던 경우로서 지정일부
터 1년간 해당 지구에서 시행
하려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
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5. 제56조제2항 전단(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
구 성과를 보고받은 위원회가
해당 지구의 성과가 부진하다
고 인정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
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아 성과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

단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
제혁신지구에서 법 제4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해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스마트규제혁신
지구 지정해제 신청을 하지 않
은 경우에는 해당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
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규
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
혁신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된 사항
및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스마
트규제혁신지구에 관한 제50조
각 호의 사항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다목은 해당 사업

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나.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해제 사유

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해제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되는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 명세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한 경우

2.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과 연계된 다른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경우

3. 해당 건축물·시설물의 변경 또는 철거에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등 변경 또는 철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변경 또는 철거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이 스마트 도시의 조성·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특례 적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스마트혁신사업의 국내외 확산방안

6 ~ 7. (생략)

②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비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기술(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포함한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 추진체계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기업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기술 또는 서비스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

-----시행
기간의 연장, -----

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본다.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략)

④ ~ ⑤. (생략)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개월 전-----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조치·취소 등) ① -----

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 ~ 5.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 (생략)

③ ~ ⑦. (생략)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관할 지역의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

스마트혁신사업 시행지역의 --

-----.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별로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 또는 수시적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②

- 스마트혁신사업 별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1 ~ 3. (생략)

4.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제공·이용 및 시험·검증 결과

5. (생략)

⑤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
----- 결과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조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적 또는 수시적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5.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여부

6.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7.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8.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결과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u>요구할 수 있다.</u> ⑤ <u>관계기관의 장은 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를 하는 경우 그 착수 및 완료 사실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u>
제57조(책임보험등의 가입) ①·② (생략)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u>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30일 전까지</u>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7조(책임보험등의 가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u> ----- ----- ----- -.

④ ~ ⑤. (생략)

<신설>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 및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받은 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책임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4.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방법·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

<신 설>

야 한다.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사업시행자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등 또는 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 중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시행자는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스마트혁신·실증사업 및 규제신속확인 등 규제특례 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 ② (생략)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2 ~ 3. (생략)	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규제특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청문) ----- ----- -----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연락처	(044) 201 - 4842